2 신시장진출지원자금

◈ 사업목적 및 융자규모

가. 사업목적

-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*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·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 육성
 - * 이차보전의 경우 민간금융기관 대출을 활용하여 지원
- 나. 지원규모 : 융자(3,825억원), 이차보전(2,000억원)
- ※ 해외법인 지원 자금의 세부 지원대상, 지원조건, 지원절차 등은 추후 공고

2-1 내수기업수출기업화

- □ (대상)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
 - * (수출실적) 최근 1년간(신청전월 기준) 직·간접 수출실적 합계
 - **「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」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
 - ① (수출 초보기업) 1불~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
 - ② (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)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(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)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(유효기간 이내)
 - * 수출지원기반활용(수출바우처사업), 전자상거래수출지원사업 등
 - ③ (기술 수출 중소기업)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(계약 포함)한 중소기업
 - * (실적) 특허, 상표, 디자인, 노하우, 기술서비스, R&D 등 무형자산 판매 등
 - ** (계약) 기술수출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
- □ (융자방식) 직접대출
- □ 대출조건

구분	대출 조건
대출한도	(직접대출, 운전) 연간 5억원 이내
대출기간	(직접대출, 운전) 5년 이내 (거치기간 2년 이내)
대출금리	(직접대출, 운전)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 또는 고정금리
기 타	•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(기업 수행)